

달라진 연말정산

'이것' 꼭 챙기세요

#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올해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  
2월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제공  
박물관 입장료·기부금 공제 확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제외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최고의 '세테크' (세금+재테크)로 꼽힌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단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함께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모바일 직불결제서비스 '제로페이' 구매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신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225만원이다.

지난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의 경우 연말정

##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추가된 공제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했다면 30% 소득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가 산후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령제 우유의종 등 한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줄어든 공제 혜택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요 일정

**2020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20일~2월 29일**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2월 29일**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2019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권에 투자한 금액(한도 3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10%·주택청약 40% 공제=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다.

세입자의 경우 총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난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산구 금고지기 광주은행...광산구청점 개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오른쪽 4번째) 1·2급고를 유치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 5번째)은 16일 광산구청지점 개점식을 열었다. <광주은행 제공>

### 지역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 아카데미 수료자 금리우대도

지난해 광산구 1·2급고를 유치한 광주은행이 16일 광산구청지점 문을 열었다.

이날 광주은행은 구청사 1층에서 광산구청지점 개점식을 열고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은행은 처음으로 광산구 1급고를 유치했다. 지난 1988년부터 시중은행인 농협은행이 1급고를 맡아온 이래 처음이다. 광주은행은 광산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급고로 6686억원, 2급고로 112억원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포용금융센터의 전문 상담을 통해 광산구 지역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과 교육, 자금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 소상공인이면 광주은행 광산구청지점과 광산구 기업경제과를 통해 전문 경영컨설팅과 집합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광산구청 '소상공인 아카데미' 수료자는 광주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0.5%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광산구청지점 개점으로 광주은행 영업점 수는 수도권 28개 포함 145개점이 됐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광산구 금고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을 담은 금융상담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택연금 월수령액 평균 1.5% 증가

2월 3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가격별 3억원 2.3%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HF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활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월3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별 월수령액은 평균 ▲3억원 2.3% 증가 ▲5억원 2.3% 증가 ▲7억원 1.0% 증가 ▲9억원 0.7%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에 사는 60세 가입자(일반주택·중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는 종전에는 매달 99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월3일 이후 새로 주택연금이 가입하면 4.7% 늘어난 103만9650원을 받는다.

HF공사 관계자는 "월지급금 변동률이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전 공사에 문의하면 월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